

대법원 2003. 9. 23 선고 2003다26037 판결 [보증채무금]

참 조 조 문

[1] 민법 제105조, 제428조, 제429조,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5조

재 판 경 과

대법원 2003. 9. 23 선고 2003다26037 판결

서울고등법원 2003. 4. 17 선고 2002나42386 판결

전 문

【원고,상고인】 주식회사 AA은행 (변경 전 상호 : 주식회사 AB은행) (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A
담당변호사 심BA 외 4인)

【피고,피상고인】 신CA기금 (소송대리인 변호사 한BB 외 2인)

【원심판결】 서울고법 2003. 4. 17. 선고 2002나42386 판결

주 문

상고를 기각한다.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이유

상고이유를 본다.

보증서의 문언상 보증기간까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불특정의 할인어음 대출로 인한 모든 채무에 대하여 보증한도액 범위 내에서 보증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, 그 보증서가 처분문서인 점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서의 문언대로 해석하여야 함이 원칙이기는 하나, 그 보증서가 금융기관 등에서 일률적으로 일반거래약관의 형태로 부동문자로 인쇄해 두고 사용하는 것인 경우 그 보증을 하게 된 동기와 목적, 피보증채무의 내용, 금융기관의 담보가치 판단관계, 그 밖에 거래의 관행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당사자의 의사가 보증서의 문언과는 달리 일정범위의 거래의 보증에 국한시키는 것이었다고 해석함이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보증책임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(대법원 2000. 3. 28. 선고 99다32332 판결, 2001. 2. 27. 선고 2000다18349 판결, 2003. 3. 14. 선고 2003다2109 판결 등 참조).

원심이 적법하게 확정된 사실관계에 의하면, 원고는 2000. 11. 30. 이EA와 사이에 여신과목 할인어음, 여신한도 4억 3,000만 원을 내용으로 하는 여신거래약정(이하 '제1약정'이라고 한다)을 체결하고, 그 담보로 이EA의 처인 윤DA으로부터 위 여신한도의 130%에 해당하는 5억 5,900만 원을 보증금액으로 하는 근보증서를 제출받은 사실, 피고는 2001. 2. 5. 이EA로부터 이EA의 원고에 대한 4억 3,750만 원 상당의 할인어음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3억 5,000만 원 범위 내에서 이를 보증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2001. 2. 9. 원고에게 보증금액 3억 5,000만 원, 피보증인 이EA, 보증기한 2002. 2. 8., 보증방법 근보증, 대출과목 할인어음, 대출예정금액 4억 3,750만 원, 보증비율 80%를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준 사실, 이에 따라 원고는 2001. 2. 14. 이EA로부터 제1약정과 는 별도로 이 사건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한 4억 3,750만 원에 대한 융자상담신청을 받게 되자, 이EA와 사이에 여신과목 어음할인, 여신한도 4억 3,750만 원을 내용으로 하는 여신거래약정(이하 '제2약정'이라 한다)을 체결하고, 그 담보로 3억 5천만 원 범위 내에서는 이 사건 신용보증서(담보비율 80%)를, 나머지 8,750만 원(담보비율 20%)에 대하여는 윤DA으로부터 근보증서를 각 제출받고 그 신청을 승인한 사실, 그 후 원고는 이EA에게 2001. 2. 23. 제2약정에 기하여 1억 원을, 2001. 3. 16. 제1약정에 기하여 4억 원을 각

할인어음방식으로 대출하여 주었는데, 원고는 제1, 2약정에 기한 각 대출에 대하여 별개의 계좌를 개설한 후 계좌별로 대출을 관리한 사실, 이EA는 제1, 2약정에 기하여 위와 같이 대출을 신청할 당시 대출 후 한도여유를 각 약정별로 나누어 명시하였고, 원고는 제2약정에 기한 대출의 경우 피고에게 그 대출실행을 통지한 사실, 그런데 이EA가 위 각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, 원고는 2001. 9. 1. 피고에게 위 4억 원 중 제1약정에 기한 채무로서 2억 7,000만 원, 위 1억 원 중 제2약정에 기한 채무로서 8,000만 원, 합계 3억 5,000만 원의 보증채무이행을 청구하였고,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제2약정에 기한 채무에 대한 보증채무이행으로서 8,000만 원만을 지급하고, 나머지 2억 7,000만 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을 거절한 사실, 한편 피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서를 발급할 즈음인 2001. 2. 5. 당시 제1약정에 기한 이EA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는 3억 6,595만 원 가량이 남아 있었던 사실 등을 알 수 있다.

사정이 이와 같다면, 비록 이 사건 신용보증서의 문언상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EA를 피보증인으로 하여 보증기간까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불특정의 할인어음 대출로 인한 모든 채무에 대하여 보증한도액 범위 내에서 보증하겠다는 취지의 근보증을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, 피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게 된 동기와 목적, 이 사건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원고와 이EA 사이에 체결된 제2약정의 내용, 이 사건 신용보증서의 보증금액 및 당시의 제1약정에 기한 잔존 채무액, 이EA의 원고에 대한 제1, 2약정에 기한 각 대출신청 내용과 이에 대한 원고의 대출 취급 및 사후 관리실태, 거래의 관행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, 이 사건 신용보증서로 인한 신용보증관계의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의 의사는 위와 같은 이 사건 신용보증서의 문언과는 달리 제2약정에 기한 거래의 보증에 국한시키는 것이었다고 해석함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된다.

원심 판시는 그 이유설시에 있어 다소 미흡하기는 하나, 피고의 보증책임은 제2약정에 기한 할인어음 대출채무에 한정된다는 이유로, 피고에게 제1약정에 기한 할인어음 대출채무에 대하여 그 보증책임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한 제1심을 유지한 결론은 정당하고, 따라서 원심이 근보증계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보증계약 당사자의 의사를 논리칙과 경험칙에 반하여 해석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.

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

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대법관 배기원(재판장) 이용우(주심) 박재윤